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인증 제도 도입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7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인증 제도 도입	2
2. 생태관광 인증 제도 도입	8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0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Ⅲ. 검토의견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전략 수립 등

개정안은 ① 생태관광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u>지정</u> 할 수 있다. <u><신 설></u>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 ----- ----- ----- ----- ----- <u>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u> -----.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u><신설></u>	③ ----- 생태관광지역----- ----- -----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u>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현행	개정안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1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전국에 35개소의 생태관광지역이 지정되어 있음¹⁾.

- 1)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연번	지역	생태관광지	지정년도
1	부산	낙동강하구	'13년 (12개소)
2	울산	태화강	
3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4	강원 양구	DMZ	
5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6	충남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7	충남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8	전남 순천	순천만	
9	경북 울진	왕피천계곡	
10	경남 창녕	우포늪	
11	경남 남해	앵강만	
12	제주 제주시	동백동산	
13	경기 안산	대부도	'14년 (5개소)
14	강원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15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16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17	제주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18	전남 신안	영산도	'15년 (3개소)
19	전남 완도	완도 상서마을	
20	광주	광주 평촌마을	
21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18년 (6개소)
22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23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	
24	제주 제주시	저지곶자왓과 저지오름	
25	강원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26	전북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27	인천	백령도	'21년 (3개소)
28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29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30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	'23년 (6개소)
31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32	제주 제주시	평대리	
33	충남 예산	황새공원	
34	경남 하동	탄소없는 마을	
35	강원 횡성	청태 및 태기산	

※ 출처: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등을 위한 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나²⁾, 동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략에 포함되는 내용,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생태관광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 기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는 생태관광의 촉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³⁾,

- 2)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3)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추가하는 것은 기존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신규 계획 수립·시행에는 추가적인 인력·예산⁴⁾이 소요되는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는 사례⁵⁾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의 대상을 환경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4)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3,400만원(연평균 1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 5)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와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대표 생태관광지역’ 지정 사례가 존재함(자료: 환경부).

2. 생태관광 인증 제도 도입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에 대한 생태관광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1조의3(생태관광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에 대하여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태관광의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방법 3. 인증 유효기간 4. 수수료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을

현행	개정안
	받지 아니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은 생태관광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⁶⁾]

연번	대상지명	프로그램	비고
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	기관운영
2	울산광역시 (태화강)	8	
3	강원 양구 (DMZ)	8	
4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3	
5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백룡동굴))	4	
6	충남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6	
7	충남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	10	
8	전남 순천 (순천만)	3	
9	경북 울진 (왕피천계곡)	1	

6)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현황이며,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의 경우, 낙동강하구에코센터(부산시 운영)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연번	대상지명	프로그램	비고
10	경남 창녕 (우포늪)	4	
11	경남 남해 (앵강만)	4	
12	제주 제주 (동백동산습지)	7	
13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11	
14	제주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7	
15	경기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4	
16	강원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4	
17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1	
18	전남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3	
19	전남 완도 (상서 명품마을)	-	미확인
20	광주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	
21	전북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3	
22	제주 제주 (저지곶자왓과 저지오름)	5	
23	강원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3	
24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 공원)	5	
25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6	
26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	4	
27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4	
28	인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마을)	5	
29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7	
30	충남 예산 (항새공원)	10	
31	경남 하동 (별천지생태마을)	2	
32	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6	
33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및 읍실마을)	0	
34	제주 제주시 (평대리 돌오름과 비자림에서 해녀들의 물길까지)	1	
35	강원 횡성 (청태·태기산)	0	
계		158	

※ 출처: 환경부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육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에 대한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① 동 제도와 유사한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제도⁷⁾의 경우 제도 시행(2021.1.) 이후 인증 신청이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증제도 폐지 의견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이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조사, 기대효과 등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②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및 수수료 부담 등으로 영세 여행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생태관광에 한정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유사한 인증제도의 난립 우려가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